

2025.2.25

2025 제4회 기후리더십아카데미

기후금융 법제 동향 분석과 전망

구준희 선임연구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정책2연구실

silver011@kric.re.kr

KRIC 한국기후변화연구원

K^{REA}
RESEARCH
INSTITUTE
ON CLIMATE
CHANGE

KRIC

Contents

I. 기후금융의 중요성과 주요수단

1. 기후금융과 기후금융법의 중요성
2. 기후금융의 주요수단

II. 국내외 기후금융 법제 동향

1. 국내 기후금융 법제동향
2.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EU, 일본, 싱가포르)

III. 기후금융 법제 전망



기후금융의 중요성과 주요 수단

1. 기후금융과 기후금융법의 중요성

2. 기후금융의 주요수단



I

기후금융
중요성 &
주요수단

1. 기후금융과 기후금융법의 중요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 기후위기 적응과 회복을 위한 기후금융 수요 증가
안정적이고 일관성있는 기후금융을 운영하려면 정책수립과 더불어 법제기반 마련 필수

기후금융? 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적응강화 & 기후변화 영향 탄성력 제고를 위한 자금 조달 및 투자 활동

1 IPCC 6차 보고서 기후변화 저감평가보고서(WG III), Chapter 15 투자와 금융

	물리적 위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과 생산차질 태풍, 폭우, 가뭄, 해일, 산불 등		재산피해 생산중단 보험비용↑ 손실보상 피해회복 자금필요
	전환 위험 고탄소 배출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 전환 X 기후위기 대응 능력 기반 경영 필요		자산가치 하락 및 투자감소 저탄소 산업전환 자금필요

2 기후변화의 경제학 제2조(목표) 제1항 (다)호

스턴 보고서
 “기후변화 대비 비용
 지금 나서면 세계GDP 1%,
 방치하면 GDP 5-20% 소요”



3 파리협정
 이 협정은 ... 온실가스 저배출 및 기후 회복적 발전이라는 방향에
 부합하도록 하는 재정 흐름의 조성

기후위기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려면 기후금융 수단 다양성 확보 및 법제화 필요

자료 : 충분한 자금을 올바른 곳에 흐르게 하는 기후금융으로(경제교육정보센터), IPCC WG III(사진 : 파이낸셜뉴스, SBS Biz, 매일경제, 한겨레, SDF 다이어리, 농촌진흥청, 교보문고)

I

기후금융
중요성 &
주요수단

2. 기후금융의 주요수단

기후금융 주요 수단은 탄소가격제, 녹색채권 및 녹색여신, Taxonomy, 세제혜택 등이 있으며, **법령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안정성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

배출권거래제

환경기후 분야 정책정보 제공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배출권거래법 (2012)

녹색분류체계(녹색채권&녹색여신)

환경기후 분야 정책정보 제공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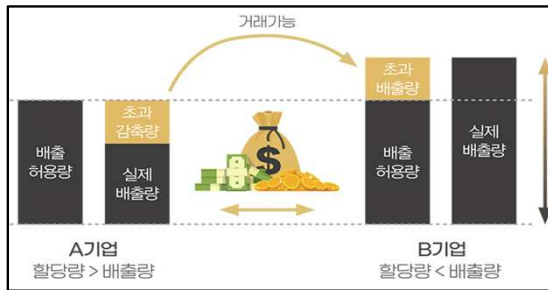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 & 녹색분류체계(2021)

부가가치세 면제 등 세제지원

환경기후 분야 정책정보 제공 및 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2016)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내야 할 세금을 낮춰주는 것으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20.12)

Green Bond Guidelines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20)

녹색여신 관리지침 녹색여신지침 (2024)

금융위원회 · 환경부 · 금융감독원

탄소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2025년)

법령과 지침을 토대로 지원대상, 지원가격, 지원범위, 지원내용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기후금융 운영의 안정성, 일관성 확보 및 그린워싱(GreenWashing) 방지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프스(배출권거래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플래티콘(Flaticon)



국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1. 국내 기후금융 법제동향

2.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EU, 일본,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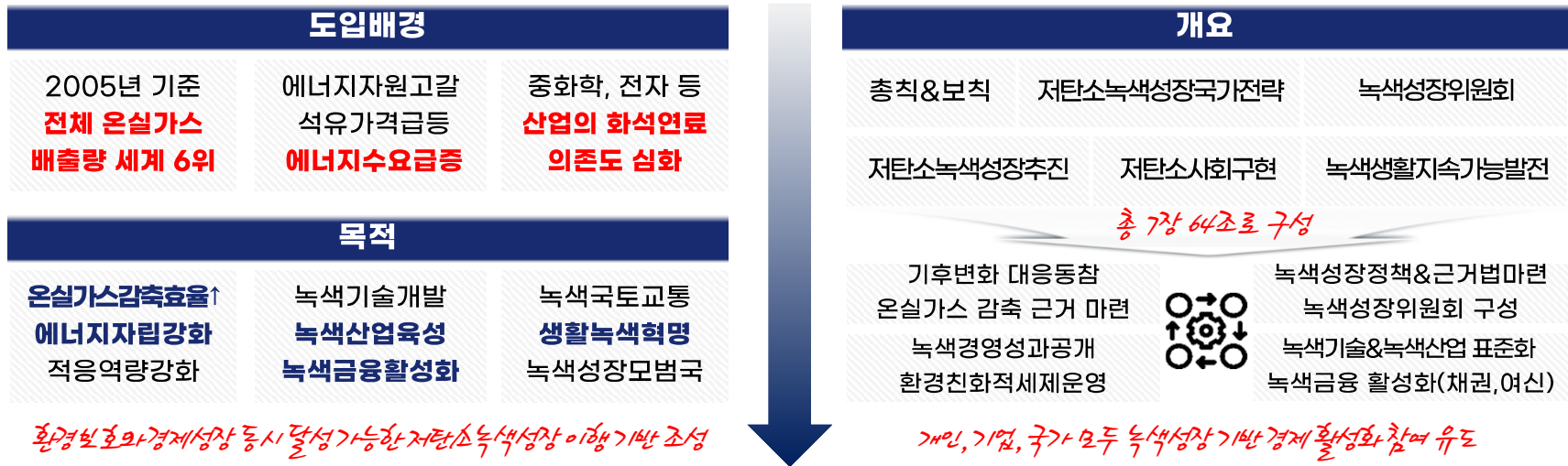


II

국내
기후금융
법제동향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녹색성장법)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온실가스 대배출 국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 및 저탄소 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마련**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 시행(2010.4)



자료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변화의 시작(나라경제),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국제적 확산방안(외교통상부)

참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內 녹색금융 관련 핵심 조항

조항	내용
<p>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p>	<p>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 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
<p>제30조 (조세제도운영)</p>	<p>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p>
<p>제46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p>	<p>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p>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6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4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p>	<p>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內 녹색금융 관련 조항

조항	내용
제25조 (기업의 녹색경영촉진)	<p>② 정부는 기업의 녹색경영을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3.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p> <p>4. 그 밖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p>
제26조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 촉진)	<p>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p> <p>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p>
제2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p>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의 조성 및 자금 지원</p> <p>2.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p> <p>3.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p> <p>4. 기업의 녹색경영 정보에 대한 공시제도 등의 강화 및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p> <p>5. 탄소시장(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온실가스의 감축·흡수 실적 등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설 및 거래 활성화 등</p>
제29조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설립과 지원)	<p>③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녹색산업투자회사에 출자하려는 경우 이를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제30조 (조세제도운영)	<p>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위기 및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p>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內 녹색금융 관련 조항(계속)

조항	내용
<p>제31조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원 및 특례)</p>	<p>①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3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 표준화 및 인증)</p>	<p>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하거나 녹색전문기업 확인, 공공기관의 구매의무화 또는 기술지도 등을 할 수 있다.</p>
<p>제33조 (중소기업의 지원 등)</p>	<p>정부는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사업화의 촉진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p>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內 녹색금융 관련 조항(계속)

조항	내용
<p>제34조 (녹색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조성)</p>	<p>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와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자원조달방안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제35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p>	<p>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2조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p>	<p>⑥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별로 측정·보고·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⑨ 정부는 관리업체의 준수실적이 제6항에 따른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⑩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6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 제9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p>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內 녹색금융 관련 조항(계속)

조항	내용
제43조 (온실가스감축조기행동촉진)	<p>①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42조제6항에 따른 목표관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행한 실적에 대해서는 이를 목표관리 실적으로 인정하거나 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미리 감축하는 행동을 하도록 촉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실적을 거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제46조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등의 도입)	<p>①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제도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및 기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거래 제도를 포함한다.</p> <p>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을 고려하여야 하고,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약화될 우려가 있는 제42조제6항의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p> <p>④ 제2항에 따른 제도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 설치·운영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제48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추진)	<p>⑤ 정부는 국민·사업자 등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따라 활동할 경우 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제53조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p>④ 정부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p>
제54조 (녹색 건축물 확대)	<p>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제58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p>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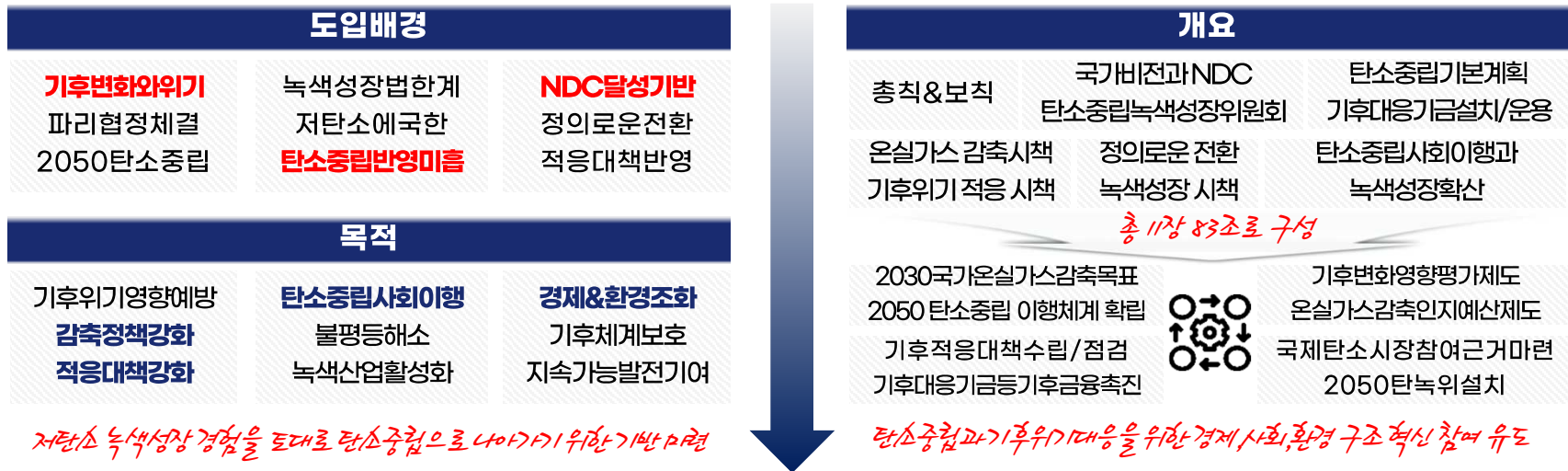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II

국내
기후금융
법제동향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파리협정 체결 후 탄소중립과 기후금융에 초점을 둔 기후변화 대응 법제 필요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녹색금융 지원과 기후대응기금 및 기후금융 지원 활성화 근거 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시행(2022.3)



자료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참고

탄소중립기본법 內 녹색금융(또는 기후금융) 관련 핵심 조항

조항	내용
<p>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p>	<p>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한다.</p> <p>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p>
<p>제5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p>	<p>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자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p>
<p>제59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지원 특례 등)</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p> <p>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p>	<p>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p>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탄소중립기본법 內 녹색금융(또는 기후금융) 관련 조항

조항	내용
제24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이하 “배출권거래제”라 한다)를 운영 한다. ② 배출권거래제의 실시를 위한 배출허용량의 할당방법, 등록·관리방법 및 거래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추진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등이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으며, 헌법기관등이 제5항에 따른 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관리업체와 협의해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관리업체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제6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세제·경영·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정보의 제공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을 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탄소중립기본법 內 녹색금융(또는 기후금융) 관련 조항(계속)

조항	내용
제29조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④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30조 (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 할 수 있다.
제31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2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③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보급을 촉진 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세제 지원 , 연구개발, 구매의무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등 관련 제도의 도입 및 확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온실가스과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대도시·수도권 등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제33조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③ 정부는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확충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려는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탄소중립기본법 內 녹색금융(또는 기후금융) 관련 조항(계속)

조항	내용
<p>제38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p>	<p>⑥ 정부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자 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42조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훼손에 종합적·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농업 등 기존 산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및 계층을 중점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46조 (국가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및 평가등)</p>	<p>④ 환경부장관은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49조 (사업전환 지원)</p>	<p>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탄소중립기본법 內 녹색금융(또는 기후금융) 관련 조항(계속)

조항	내용
제53조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센터의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5조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등)	정부는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이하 “ 녹색경영 ”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대한 지원 및 녹색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제57조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등 촉진)	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녹색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57조 (조세제도 운영)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 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58조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①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자원 조성, 자금 지원, 금융상품의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탄소시장 거래 활성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탄소중립기본법 內 녹색금융(또는 기후금융) 관련 조항(계속)

조항	내용
<p>제59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지원 특례 등)</p>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제60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p>	<p>제60조(녹색기술·녹색산업의 표준화 및 인증 등) ①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녹색기술·녹색산업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표준화 기반을 구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제61조 (녹색기술, 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 조성 등)</p>	<p>① 정부는 녹색기술의 공동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위한 집적지나 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및 우수한 녹색기술·녹색산업 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4.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사업추진체계 및 자원조달 방안 ③ 정부는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녹색기술·녹색산업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같은 항에 따른 집적지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참고

탄소중립기본법 內 녹색금융(또는 기후금융) 관련 조항(계속)

조항	내용
제62조 (녹색기술, 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②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5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구성 등)	③ 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제66조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 소비 문화의 확산)	⑤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 어신전문금융업법 」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7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홍보)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 2. 승용·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
제68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6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제74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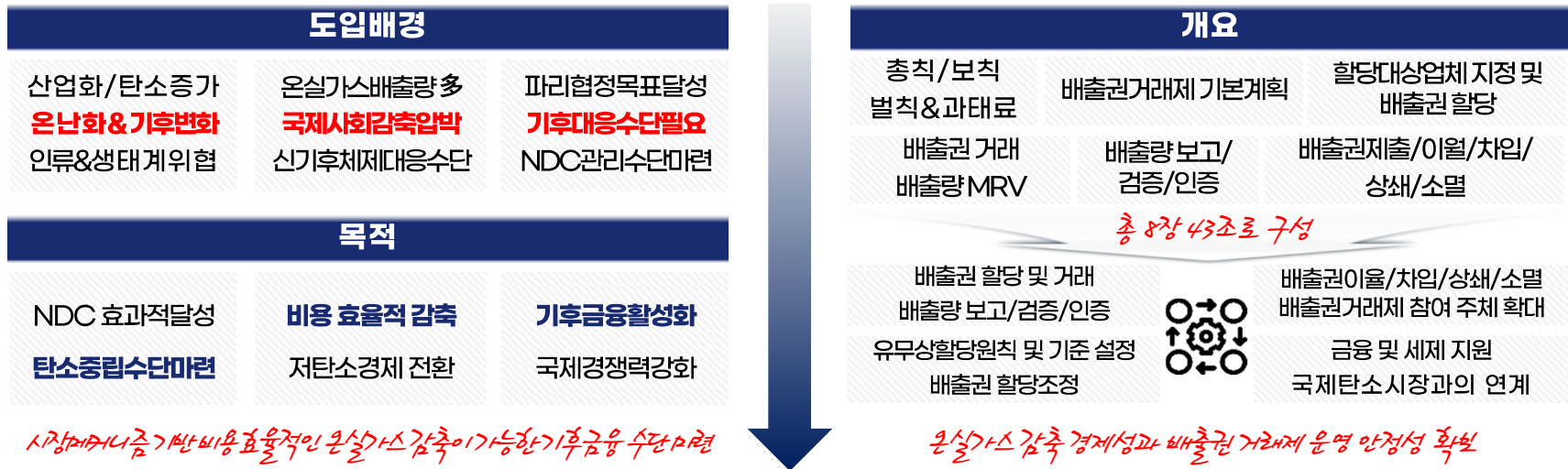
II

국내
기후금융
법제동향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

저탄소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자원 마련을 위한 기후금융 필요성 ↑

우리나라는 기후금융 주요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2012)



자료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내부자료 등

참고

배출권거래제 추진경과 Timeline

	1차 계획기간			2차 계획기간			3차 계획기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제도 운영 목표	제도 안착			상당수준 감축			적극적 감축				
할당방식	대부분 GF, BM할당(3개) 정유, 시멘트, 항공			BM할당 확대(7개) +발전, 지역냉난방, 집단에너지, 폐기물			BM할당 확대(12개) +철강, 석유화학, 건물, 제지, 목재				
무상할당비율	100%			97%			90%				
할당량 산정단위	배출 시설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권 거래대상	할당대상업체			+ 시장조성자			+ 제3자 참여 확대				
KOC 제출한도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10%						각 이행연도에 제출해야하는 배출권의 5%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 확정에 따라 유상할당 확대 예정이므로 확대에 따른 수익증가분 활용 방안 고려

자료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내부자료 등

II

국내
기후금융
법제동향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환경기술산업법)

파리협정은 기후대응을 위한 기후재원 마련 명시, 국내법에 기후재원 지원 기준 마련 명시
녹색분류체계(Taxonomy)를 기반으로 녹색여신지침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도입

도입배경		
파리협정 발효 NDC&탄소중립 지구 2°C↓+1.5°C↓	지속가능발전기반 기후금융 수요 증가 EU 택소노미 등장	녹색산업비중증가 그린워싱방지필요 녹색채권및여신부재
목적		
금융시장투명성↑ 국제표준정합성	기후정책일관성확보 그린워싱예방준비	환경산업경쟁력강화 지속가능경영유도

기후금융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식별하고 그린워싱을 예방할 기준 필요



선력과 집중을 바탕으로 기후금융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지원기반 구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0조의4 신설 및 녹색분류체계 마련 명시(2021.4)



자료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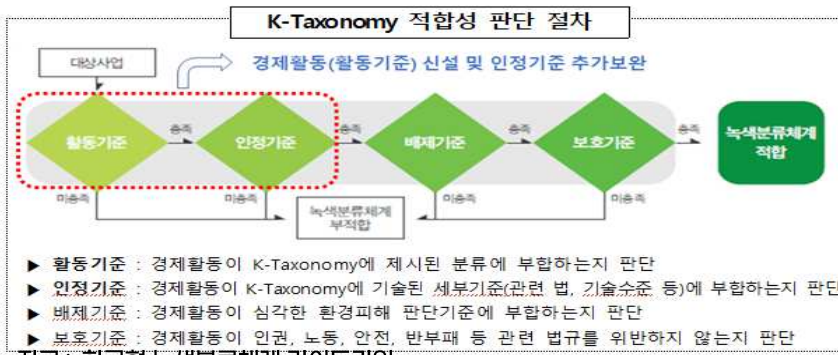
참고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파리협정 목표달성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하여
감축과 적응 등 기후대응 활동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과 체계 마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2022)



자료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2022)

목적		
국제기준정합성 그린워싱방지	녹색금융활성화 녹색투자확대	기업ESG경영촉진 글로벌경쟁력확보

부문별 녹색기준 세분화 & 구체화

녹색부문(6개)			전환부문(1개)		
감축	적응	물 보전	감축		
순환	오염 방지	생물 다양성	산업	발전&에너지	수송

금융기관 녹색기준 판단 지원

활용방안		
녹색금융상품 투자성과평가	기업 시설 및 운영 자금대출 지원 기준	녹색금융상품비중 정보 공개등

참고

녹색여신지침 &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녹색분류체계에 속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녹색채권과 녹색여신 필수
녹색채권과 녹색여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과 근거규정 필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다시 생각하는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2. 12.(목) 10:00 배포 2024. 12. 12.(목) 08:00

제6차 기후금융TF 및 '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

✓ 6차례 기후금융 TF를 통하여 ①기후금융 공급 확대 ②기후금융 역량 제고 ③기후금융 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분야에 적용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
- 금감원·한은·15개 금융사 공동으로 “기후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중
- 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금융권 탄소배출량 플랫폼” 구축 추진

< 기후금융TF 주요 논의과제 >

기후금융 공급확대 (Financing the Green)	기후금융 역량제고 (Greening the Finance)	기후금융 인프라 확충 (Building the Green Infra)
· 정책금융 공급 확대 (30년까지 420조 공급)	· 기후금융 리스크관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 기후금융촉진법 제정 논의
· 혼합금융 공급 확대 (미래에너지펀드 9조원, 기후기술분야 9조원)	· 기후금융상품 개발 (공급망 중소기업 우대지원, 기후보험, 그린 CLO 등 금융상품, 디지털 혁신)	· 녹색채권('22) 및 여신지침('24) 제정 · 한국형 전환금융 도입 · 녹색금융 전문인력 및 녹색성 평가기관 확충
· 민간 녹색금융 확대 (금융사별 자율 목표)	· 금융회사 역량 강화 (지배구조·인력확충)	· 금융배출량 플랫폼 구축
		·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 ESG 공시기준 도입 논의
		· 국제공조 강화

자료: 제6차 기후금융TF 및 '24년 기후금융 추진현황, 녹색여신 관리지침

녹색여신 개요

개념	적합성판단	관리원칙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본 지침에 따라 취급되는 여신	채무자 직접 실시 금융회사 실시	내부통제체계수립 채무자인내사항수립 책임자 자격 명시
신용대출/보험대출 PF/운전자금대출	녹색분류체계기준 활동인정·세제·보호 독립된 외부기관 검토 & 참고자료로 활용	책임자업무 분류 녹색여신혜택 녹색자산비율산출

녹색여신 관리지침

녹색여신 관리지침 마련 (2024)

2024. 12.

금융위원회 · 환경부 · 금융감독원

목 차

제1장 총칙 1

제2장 녹색여신의 정의 3

제3장 적합성판단 6

제4장 자금의 사용 8

제5장 자금 목적의 평가 및 선정 9

제6장 자금의 관리 11

제7장 보고 13

제8장 녹색여신의 관리 8

제9장 외부검토기관의 활용 15

참고

녹색여신지침 & 녹색채권가이드라인

녹색분류체계에 속하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녹색채권과 녹색여신 필수 **녹색채권과** 녹색여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과 근거규정 필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개요

개념	요건	기대효과
기후대응사업 자금조달을 위한 유동적 금융상품	녹색분류체계 반영	ESG 경영 점검 및 개선 촉진수단
녹색사업 신규자금 & 차환조달용 채권	자금사용, 평가선정, 자금관리, 보고 충족	투자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외부감사 및 사후보고 등 추가절차 필요	자금조달확대기여 채권수요변동감소



CONTENTS

PART 01 서론	PART 03 녹색채권 발행절차
1. 배경 및 목적	1. 발행계획 수립
2. 범위 및 적용 대상	2. 관리체계 수립
3. 주요 내용	3. 적합성판단 요청
4. 사후(최종)보고	4. 사전 외부검토
5. 녹색채권 발행	5. 채권발행
6. 사후(연례)보고	6. 사후(연례)보고
7. 사후 외부검토	7. 사후(연례)보고
8. 기타 사항	8. 기타 사항
9. 부록	9. 부록
PART 02 녹색채권의 개요	
1. 녹색채권의 정의	
2. 녹색채권의 장점	
3. 녹색채권의 핵심요소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2022)

자료 :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채권 발행절차



참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에너지 소비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여를 위하여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자금 및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자금 지원

개념	사업대상	지원대상&범위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 시 소요자금 일부 용자/이차보전	ESCO*투자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절약시설/생산시설 수요관리설비 장기사용 열수송시설 ex)폐열, 열병합발전	중소중견기업, 공공기관,ESCO 시설&설비구입비, 공사비, 감리비등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2024. 9. 20] | 법률 제20443호, 2024. 9. 2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여 에너지 소비절약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한 발전 및 국민의 건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시설, 설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물자·기술·정보·금융 등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계측장치,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계측장치,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계측장치,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차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시행 2025. 1. 31] | 대통령령 제55288호, 2025. 1. 21.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044-203-514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자, 시설, 설비,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력·물자·기술·정보·금융 등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계측장치,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3.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계측장치,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4. "에너지관리시스템"이란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력·계측장치,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5.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평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이용합리화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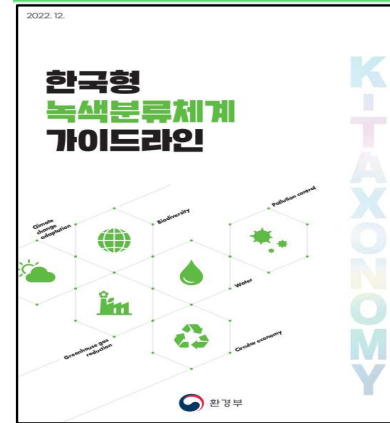
자료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도입배경

'80년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정, 정책자금지원 실시

- '08년 •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제시
- '14년 • 제5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 '19년 • 에너지효율혁신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 '20년 • 제6차 에너지 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수립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관계부처 합동)

녹색분류체계와의 연관성(예시-폐열, 열병합발전)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

나. 발전&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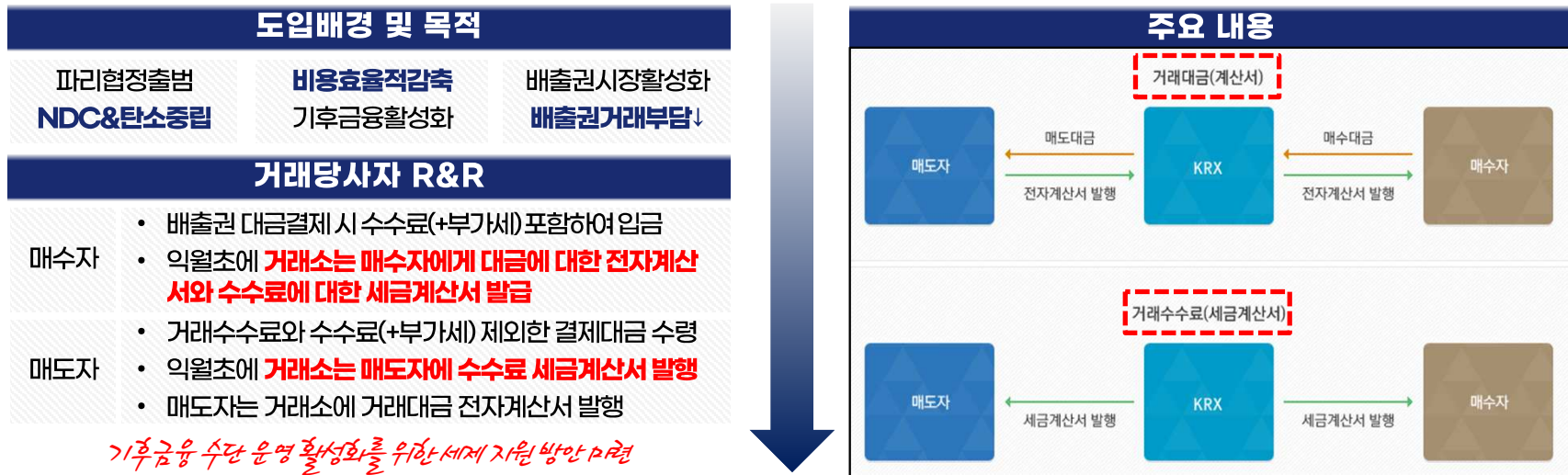
- (7) 폐열, 냉열, 감압,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18) 미활용 폐열, 냉열 관련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활동

II

국내
기후금융
법제동향

4. 조세특례제한법-탄소배출권 부가세 면제

배출권 거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실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차례 연장, 배출권의 부가가치세는 면제하되 거래수수료에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 도입



자료: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한국거래소

참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 전기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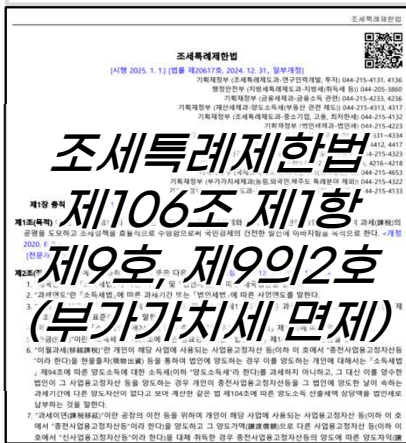
기후금융은 기후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연계된 지원이며 기후산업은 기후금융 지원을 받는 부문 배출권거래제, 여신 및 채권 외 각종 세제지원을 통하여 기후금융 지원 가능

전기, 수소버스 구입비용 부가가치세 면제

개요	지원내용
운송사업용 버스를 구매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 면제(~2025.12.31)
사업부담경감 내연기관전환촉진	<p>지원대상</p> <p>운송사업용 버스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p> <p>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p>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개념	지원내용	지원방법&기타
에너지절약형 시설 투자금 일정비율로 세액공제	내국인이 공제자산 투자	투자완료일 과세연도 공제 실시
에너지이용합리화 온실가스감축기어	투자금액의1% 공제 (중견5%, 중소기업10%)	2개이상과세연도는 연도별 투자금에 적용
	소득세 공제 또는 법인세 공제	추가공제최대3% (기본공제금액2배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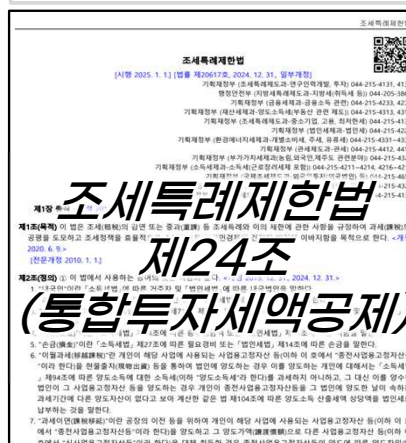
자료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한국에너지공단

녹색분류체계와의 연관성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

다. 수송

- (1) 무공해(전기,태양광,수소) 차량생산 및 이에 필요한 설비 구축/운영
- (3) 전기충전소, 수소연료공급 시설 육상인프라 구축/운영



녹색분류체계와의 연관성

녹색부문 온실가스 감축

나. 발전&에너지

- (7) 폐열, 냉열, 감압, 열병합 발전설비, 열 생산설비를 구축&운영하는 활동
- (18) 미활용 폐열, 냉열 관련 에너지 공급 인프라 구축/개조/운영활동



국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1. 국내 기후금융 법제동향

2.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EU, 일본, 싱가포르)



II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1. EU(EU 배출권거래제)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시장메커니즘 기반 온실가스 감축방식 필요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고 배출량 약 40% 커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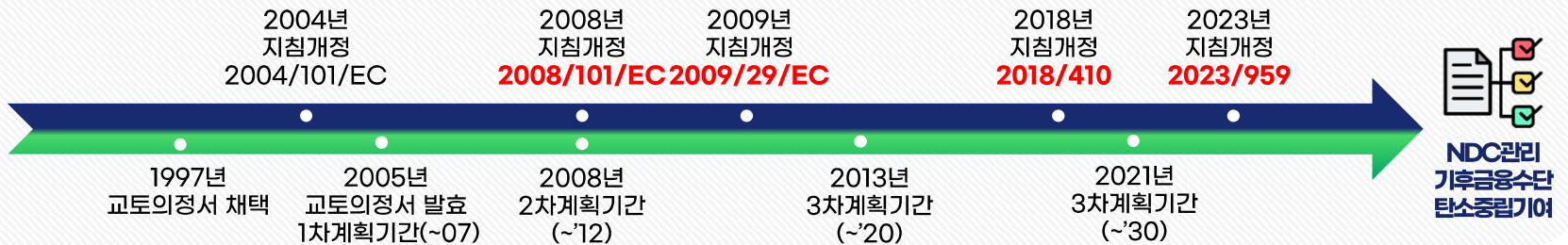
도입배경		
UNFCCC이행 교토의정서도입 감축의무이행대상	국가감축목표설정 1990년대비5.2%	교토메커니즘도입 UN 주도 ET도입 JI/CDM 등 거래
목적		
NDC효과적달성 탄소중립수단마련	비용효율적감축 저탄소경제전환	기후금융활성화 탄소중립대륙달성

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배출권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 필요

개요		
총칙/보칙 별칙&과태료 배출량MRV/인증 등록부	기본계획 할당대상업체 지정 항공, 운송, 탄소누출	배출권 할당 배출권 거래/경매 제출/이월/차입/상쇄/소멸 국가간ETS연계등
총 5장 33조로 구성		
배출권 할당 및 거래 배출량 보고/검증/인증	배출권거래제 참여 부문 확대 회원국간 탄소시장 연계	유무상할당원칙 및 기준 설정배출권 할당조정 제출/이월/차입/상쇄 금융 및 세제 지원

다양한 회원국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배출권거래제 규정 고려

EU 배출권거래제 지침(Directive 2003/87/EC) 도입(2003)



자료 : EU ETS, EU Commission

참고

EU ETS 지침 주요 개정사항

지침	개정사항
2004/101/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 부속서 I 당사국은 UNFCCC 부속서 I 등재된 국가중 교토의정서 비준 당사국 의미 • ERU는 교토의정서 제6조 J에 따라 발급됨 • CER은 교토의정서 제12조 CDM에 따라 발급됨 ❖ 제11조 : CER, ERU를 배출권거래제에 사용 허용(단, LULUCF 제외)(~2012.12.31) ❖ 제17조 :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내에 J, CDM 사업 감축실적 사용 및 모니터링 내용 포함 ❖ 제21조 추가 • 개발도상국 및 경제전환기에 있는 국가대상으로 J, CDM 사업을 위한 역량강화지원사업 추진
2008/101/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 :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 관련 내용 명시 • 배출 개념, MRV, 할당, 할당예비분, CER 및 ERU 사용 허용
2009/29/E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9조 : 전체 배출 할당 감축 명시 ❖ 제9조의 α 추가 : 전체 배출 할당 조정 허용 ❖ 제10조 : 경매 대상은 총 배출 할당량의 88%까지 허용 • 2005년 또는 2005년~2007년 3년 평균중 더 높은 배출 할당량의 88% • 10%는 EC내 특정 회원국에 분배, 2%는 기준연도 배출량보다 20% 낮은 회원국에 제공 • 경매수익용도 지정 : 산림 조성, CCS, 저탄소 교통 전환, 감축기술 개발 등 ❖ 제11조α : 2012년 까지 미소진한 CER, ERU를 2013부터 ETS 배출권으로 교환 요청 가능하며 2015년 3월31일까지 교환 완료 ❖ 제13조 : 할당배출권 유효기간 명시

자료 : EU ETS, EU Commission

참고

EU ETS 지침 주요 개정사항(계속)

지침	개정사항
2018/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조 2항: 경매 대상은 총 허용량의 90%까지 허용 ❖ 제10조α 20항: 무상할당 결정 시 처음 할당량에 비하여 15% 증감한 경우 예비분을 사용하여 할당량 조정 ❖ 제13조: 할당배출권 유효기간은 이행계획내에서 무제한 ❖ 제27조α: 3년전 바이오매스로 인한 배출량을 무시하고 2,500톤 미만 배출 시설에 대하여 EU ETS 적용 제외 • 배출 시설 목록 제출전에 해당 내용 통지, 이를 증빙할 모니터링 데이터 필요
2023/9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조: 파리협정 목표와 탄소중립 기여 명시 ❖ 제3조: 배출권거래제 부문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운 추가, 해운 관련 단어 정의 정리(항해, 해운회사, 기항지, 크루즈 여객선, 탄소차액계약 등) • 건물, 수송, 소규모 산업 부문 추가(ETS 2, 2005년 대비 42% 감축) ❖ 제9조: 배출허용총량 및 선형감축계수 조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 NDC에 따라 2005년 대비 61% 감축 제안 • 선형감축계수 조절: 현재 2.2%에서 4.2%로 확대(2024~2027: 4.3%, 2028년부터 4.4%) • 배출허용총량 조정: 2024년 9,000만톤, 2026년 2,700만톤 감축 ❖ 제10조α 1항: 2026년부터 무상할당 시 CBAM 계수를 적용하여 할당량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2.5% 감축~2033년 86%감축 ❖ 제11조: 무상할당 비중 및 무상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권거래제 부문 확대와 CBAM 계수 등을 고려한 무상할당 실시 • 제16조: 배출권 미제출 기업 명단 공표 및 처벌 규정 강화 ❖ 제30조: 배출권거래제 부문에 건물, 도로 운송 부문 추가

자료: EU ETS, EU Commission

II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2. EU(EU 지속가능금융 공시)

EU는 지속가능금융 지원 기업과 금융기관에게 ESG 등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의무 요구

CSRD와 SFDR을 중심으로 ESG외 지속가능리스크 등 공시 이행중

도입배경 및 목적

EU는 2016년 부터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금융(Sustainable Finance) 추진 결정

EU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지속가능금융 = ESG를 고려하는 금융 및 투자활동

EU는 **지속가능금융을 올바르게 지원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기업에 ESG, 비재무정보 등 정보 공시 의무화**

투명한지속가능금융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대륙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 필요

주요 내용

모든기업은 CSRD 기준으로 ESG+지속가능리스크 공시
금융기관은 SFDR 기준으로 투자 및 상품 지속가능성 공시

구분	NFRD (비재무정보보고)	CSRD (기업지속가능성)	SFDR (지속가능금융공시)
채택	2014년	2021.4	2019
시행	2018년	2024년	2021.3
대상	직원500명 초과대기업	모든 EU 대기업&상장기업 (상장소기업제외)	금융기관

지속가능금융을 지원하는 또는 자원받는 주체 모두 정확한 공시 기준 필요

EU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CSRD(2024.10) 및 SFDR(2021.3) 도입



자료 : 주요국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논의(보험연구원), EU 지속가능금융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KDB미래전략연구소)

참고

NFRD? → CSRD? → SFDR?

구분	NFRD(비재무정보보고지침)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SFDR(지속가능금융공시보고지침) (Sustainability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채택	2014년	2021년	2021
시행	2018~2023년	2024년 (2026년까지 적용기업 확대)	1단계 : 2021.3 2단계 : 2023.1
적용대상	종업원수 500명 초과 대기업 (상장사, 은행, 보험사 등 약 12,00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업원수 250명, 순매출 3천만유로, 순자산총액 2천만 유로 대상중 2가지 이상 충족하는 대기업 상장사, 은행, 보험사 등 약 49,000개 소규모 상장사는 종업원수 10명 미만 또는 매출약 2천만유로 미만 제외 	종업원서 500명 이상 EU 역내 금융기관 (은행,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공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호 •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 • 인권존중 • 반부패 • 경영진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별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 정책이행결과 • 리스크 • 핵심비재무 성과지표 (KPIs) • NFRD 내용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중중요성) • ESG 장기 목표 및 정책 관련 정보 • 사회, 인간,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 정보 • TCFD 1.5°C 제한 기후 시나리오 • SFDR&EU Taxonomy 규정 준수 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지속가능성 공시 • PAIs*(지표, 식별, 실사정책 및 투자반영방법, 미반영시 해당 사유) ESG 표방 금융상품 지속가능성 공시 • 계약이전단계, 웹사이트, 사업보고서 ❖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적 기술 기준(RTS) 마련 • 법적 구속력 ○
공시수단	연차보고서	경영보고서	
기타	제3자 검증 필요X	제3자 검증 의무적	-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PAIs, Principal Adverse Impacts)

자료 : 주요국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논의(보험연구원), EU 지속가능금융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KDB미래전략연구소)

참고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구분	내용
개념	CSRD 공시를 위한 CSRD 내부기준
담당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내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SRB)
도입	2023.1
시행	2024년(CSRD와 함께 도입됨)
공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RS 1 - 일반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보고 필수개념과 원칙 ESRS 준수, 공급망과 가치사슬, 이행 공시 원칙, 이중중요성 등 ❖ ESRS 2 - 일반, 전략 등 공시요구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배구조 : 감독기구 역할, 지속가능성 실사보고서/위험관리/내부통제 등 영향/위험/기회관리 : 지속가능성관련 영향, 위험, 기회 식별 및 평가 등 전략 : 마켓포지션, 가치사슬, 이해관계자 등 지표 및 목표 : 설정 목표 경과&성과 측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국제공시표준이 기업에게 혼란과 부담을 준다는 시장의 지적을 감안하여 TCFD, ISSB 등 다른 공시기준 수용하는 상호운용성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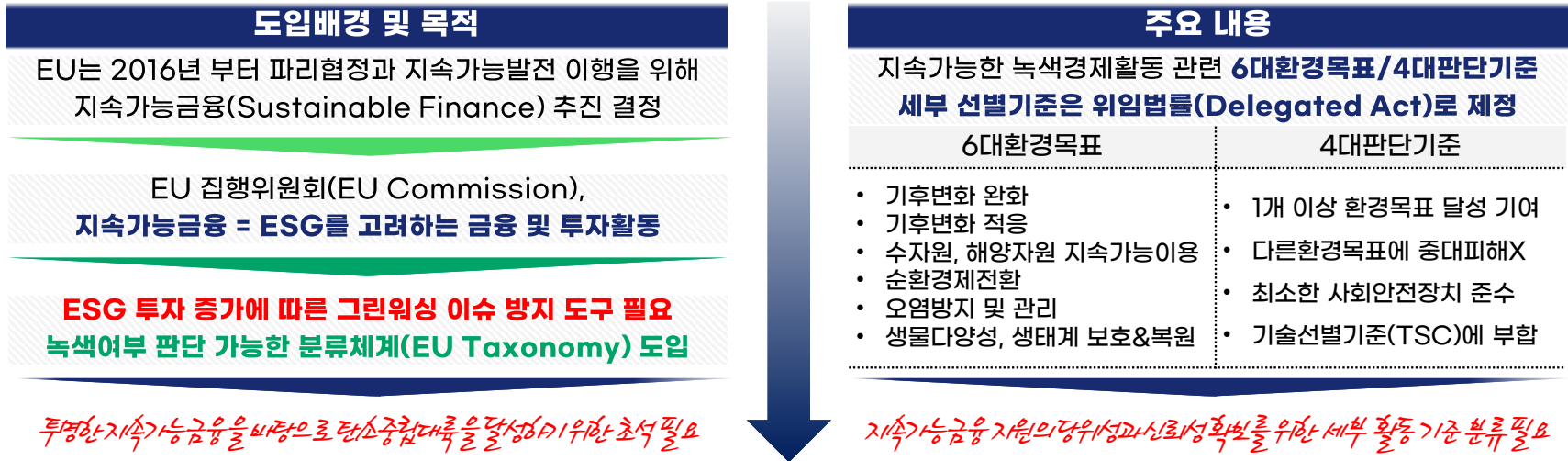
자료 :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주요 내용(삼일 PwC), EU 기업의 CSRD 공시 준비 현황(삼일 PwC), EU CSRD&ESRS 이해 및 대응방안(삼일 PwC)

II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3. EU(EU Taxonomy)

EU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저탄소 경제발전 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분류규정(Taxonomy)을 도입하고 녹색분류체계 수립



EU Taxonomy 규정(2020/852/EU) 도입(2020.7)



자료 : EU의 지속가능금융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KDB),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EU Commission)

참고

위임입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Taxonomy 규정 : 2020/852/EU ❖ 기후 위임법(CDA, Climate Delegated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위임입법 • 기후변화 완화 기여 활동(9개 분야 88개 활동) • 기후변화 적응 기여 활동(13개분야 95개 활동) ❖ 환경 위임법(EDA, Environmental Delegated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해양,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임입법
완화, 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임입법 시행(2022.1) : 2021/2139/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완화와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에 대한 기술적 심사 기준(TSC,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마련 ❖ 2차 보완 위임입법 시행(2023.1) : 2022/1214/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을 기술적 심사 기준(TSC,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대상에 포함하는 보완 기후 위임입법(Complementary Climate Delegated Act) 시행
수자원, 해양,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위임입법 시행(2023.6) : 2023/2486/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자원, 해양,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물다양성에 실제 기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적 심사 기준(TSC, Technical Screening Criteria)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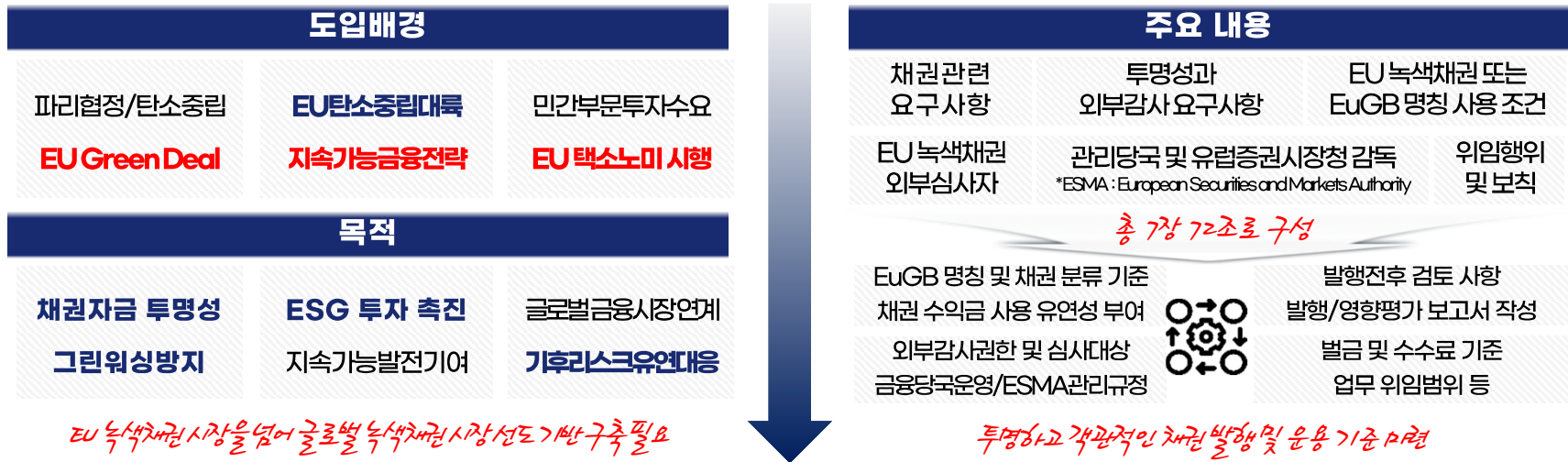
자료 :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EU Commission)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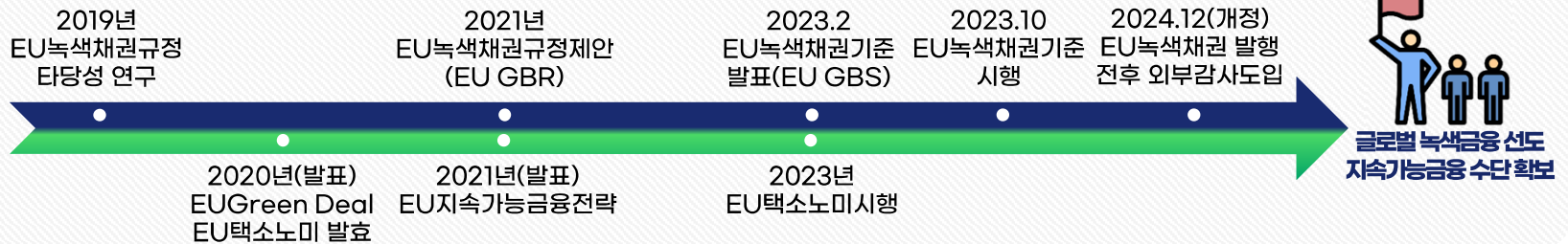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4. EU(EU GBS)

EU 그린딜(Green Deal) 발표로 지속가능금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녹색채권에 대한 수요 증가
EU는 녹색채권표준(GBS, Green Bond Standard)을 도입하여 지속가능금융 시장 선도



EU 녹색채권표준(EU 2023/2631) 도입(2023.10)



자료 : EU의 지속가능금융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KDB), The European green bond standard - Supporting the transition(EU Commission)

II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5. EU(전환금융 권고안)

EU는 지속가능금융에 대한 새로운 패키지(Package)를 통하여 전환금융 필요성 언급 권고안을 통하여 탄소 多배출기업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전환금융 준비중



개요		
개념	배경과 목적	목표
탄소중립 과도기 활동 자금 조달	EU지속가능실행계획 기술전문기(TEG)지문	탄소중립달성지원
탄소多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대규모 산업중심)	실물경제성장보완 그린워싱방지	금융시장의신뢰구축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촉진

주요 내용			
목적,범위, 정의	전환금융 지원기준 (택소노미 등)	전환금융 활용조건	전환금융 조달수단
중소기업 지원방안	전환금융기관 권고사항	녹색금융과의 관계 정립	
전환금융 수요 결정 및 구체화 과학기술 기반 전환경로 사용	금융기관 및 투자자 권고사항 전환자금상품개발	16개 조항, 7개 부속문	EU 택소노미 및 벤치마크사용 전환금융 조달 수단 명시 중소기업 권고사항 EU회원국/감독기관 권고사항

자료 : EU Commission, Sustainable finance package, EU의 지속가능금융정책 추진동향과 시사점(KDB)

II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6. 일본(전환금융 기본지침과 GX 추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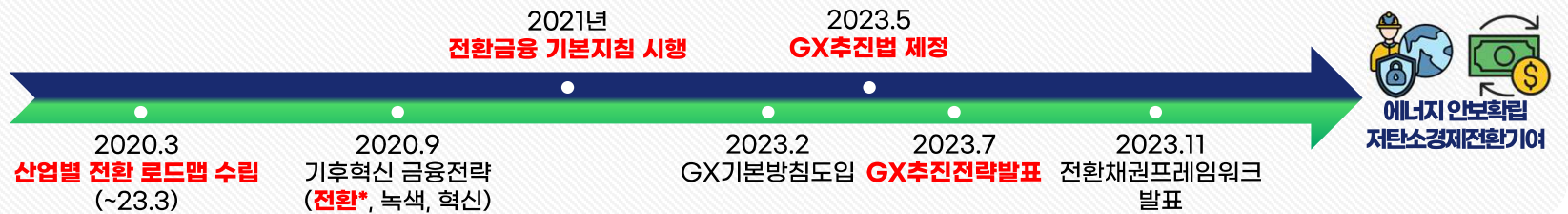
일본 내 온실가스 多배출기업의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기본지침을 도입하여 기반을 구축하였고

GX 추진법과 GX 추진전략으로 전환금융 지원 구체화

전환금융 기본지침		GX추진법*	
배경 및 목적	2050 탄소중립 & 2030 NDC	배경 및 목적	파리협정과 탄소중립 목표를 중심으로 전 세계 탈탄소 가속화 및 대응 방안 마련
	온실가스 多배출산업 전환 위한 자금 마련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어려움 발생에 따른 에너지 안보 대응 전략 수립
	실물 경제 영향 보호		
주요 내용	전환전략 거버넌스 : 파리협정 부합 전환 전략 수립 정의로운전환 & TCFD 기반 공시	주요 내용	추진전략 책정/실행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 전략 책정
	환경적 중대성 : 핵심 비즈니스 전환 전략 수립 (에너지, 화학, 항공, 선박 등)		경제이행채 발행 : '23년부터 10년간 GX경제이행채권 발행 (10년간 20조엔 규모)
	과학기반 목표경로 : SBTi 기반 단/중/장기 전환 목표 수립 국가내 산업별 로드맵 준수		탄소가격제 도입 : 배출권거래제(26년) & 유상할당(33년) /탄소부과금제(탄소세X)
	이행투명성 : 정량지표 설정 및 공개 정량화 어려움 경우 외부기관 검증		GX추진기구 설립 :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 추진 기구 설립

*탈탄소 성장형 경제 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의 추진 법률

전환금융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산업 전환 시작, 고도화를 위한 GX 추진법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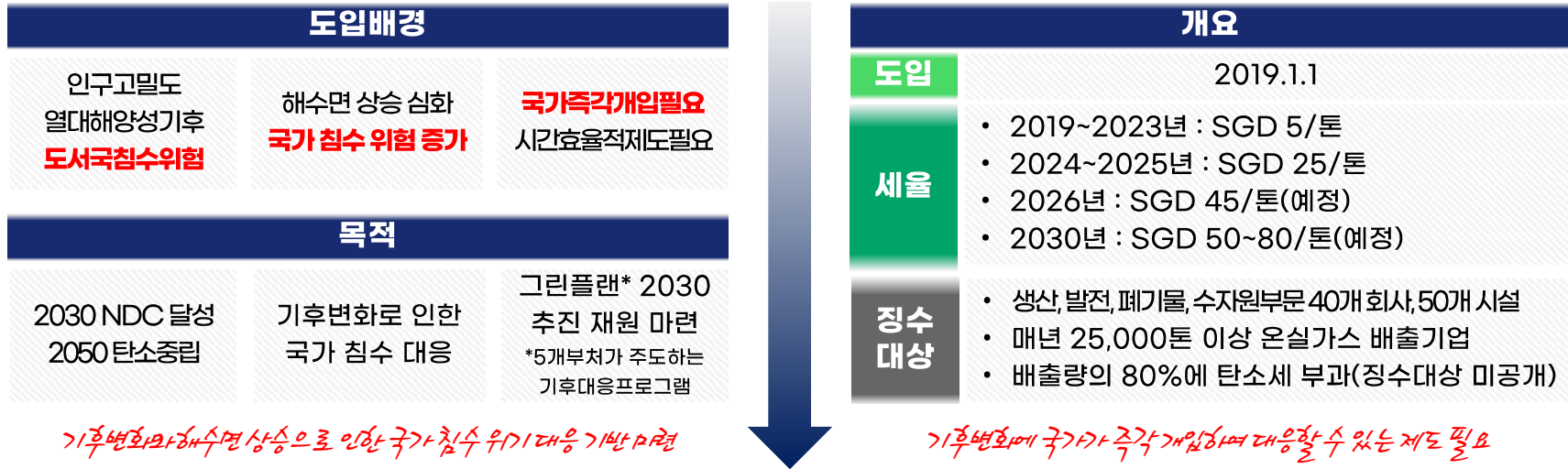
자료 : 일본 전환금융 동향과 시사점(우리금융그룹), 일본 전환금융 제도 및 은행권 동향(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일본 GX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KIEP), 세계법제정보센터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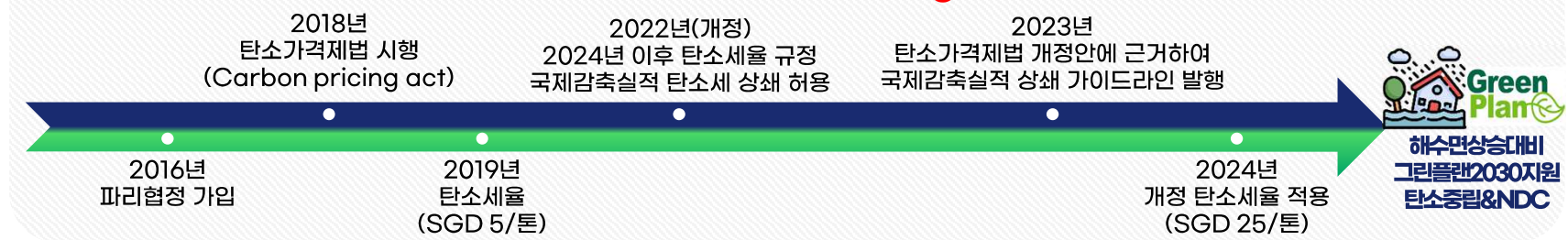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7. 싱가포르(탄소세법)

싱가포르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19년 1월부로 탄소세 도입
동남아시아 최초 탄소세 도입 사례이며 국제감축실적을 활용한 탄소세 상쇄제도 병행



탄소가격제법(Carbon Pricing Act) 도입



자료 : 싱가포르 Carbon Pricing Act, Carbon Tax(NCCS), International Carbon Credits Guidance Document, Greenplan 2030

II

해외
기후금융
법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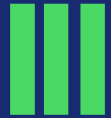
8. 싱가포르(지속가능성 보고 보조금 지원제도)

싱가포르는 2025년부터 상장기업 대상으로 기후공시 의무화
기후공시 의무화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보조금(SRG) 도입

싱가포르 기후공시 정책	
ESG 보고 의무화	상장 기업 2025년부터 국제 지속가능성보고 기준(ISSB)에 따른 기후 리스크를 반드시 보고(Scope 1, Scope2)
	비상장 기업 매출액 10억 달러(SGD) 이상 또는 자산 5억 달러(SGD) 이상, 비상장 기업은 2027년부터 보고 의무화
ESG 보고 플랫폼 지원	증권거래소 (SGX) + 통화청 (MAS) = ESGenome 플랫폼 도입
	ESG 데이터를 한 곳에 수집하여 제공 국제 기준(ISSB)을 반영한 양식을 자동 적용 증권거래소에 공개하여 투명성과 신뢰 강화

지속가능성 보고 보조금(SRC)	
개요	기업의 기후공시를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비용 지원
근거 규정	지속가능성 보고 자문위원회(SRAC)* 권고안 <small>*싱가포르 회계 및 기업 규제청(ACRA)과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규제 기관 SGX RegCo가 공동으로 설립</small>
	D14 기업 보고서 작성 비용과 노력 보고서 활용자 이익간 균형 고려 D15 보고서 데이터 품질 개선과 배출량 측정 및 관리를 위한 탄소회계 솔루션 지원
지원 자격	싱가포르 증권거래소(SGX)에 상장된 모든 싱가포르 법인
	연간 수익 최소 SGD \$1억 ISSB 기준 지속가능성 보고서 최초 작성법인
지원 내용 규모	내용 외부컨설팅 비용, 외부 보증비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인력교육
	규모 전체 작성 비용의 30% 또는 SGD 150,000중 낮은 금액

자료 : 싱가포르, 대기업 기후공시비용 30% 지원한다. 2027년 비상장기업도 기후공시 의무화(임팩트온), Sustainability Reporting Grant(Enterprise Singapore), Turning Climate Ambition into action in Singapore(SRAC)



기후금융 범제전망

1. 전환금융 확대

2. 기후공시 의무화와 공시 의무화 지원



III

기후금융
법제전망

1. 전환금융 확대

EU 지속가능금융 전략을 토대로 **온실가스 高배출산업에 대한 전환금융 권고안 별도 마련**
일본은 전환금융 기본지침을 도입하여 전환기반 구축 후 **GX 추진전략으로 구체화**

EU 전환금융 권고안 마련(2023)

EU 전환금융 권고안 마련(2023)

THE EUROPEAN COMMISSION
 Having regar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nd in particular Article 292 thereof,
 Whereas:

- The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y by 2050 is challenging but also offers opportunities for the Union economy. Investing in the green transition will help make Europe the first climate-neutral continent with a sustainable economy.
- Urgent action is needed in this decade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5 % and reach our environmental objective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the energy and energy taxes, by 2030. The Union will need to invest about EUR 700 billion more each year from 2021 to 2030 than it did from 2011 to 2020 to decarbonise its economy, achieve its environmental objectives (1) and finance the proposed Net Zero Industry Act (2).
- Finance for the transition to a climate-neutral and sustainable economy is needed today for those undertakings that want to become sustainable but cannot still do so on a fully environment-friendly, climate-neutral performance model. Transition Finance will be necessary over the coming years to ensure a timely and orderly transition of the real economy towards sustainability while ensur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U economy. Not all undertakings are yet suitable for a sustainable economy and economic activity can reach these objectives at different pace.
- Sustainable finance is about financing both what is already environment-friendly and what is transitioning to such performance levels over time. The level of sustainable investments is set to increase over time, as do transition programmes.

일본 전환금융지침(2021) & GX법(2023) 도입

일본, 전환금융 기본지침(2021) GX법 시행(2023)

GREEN TRANSFORMATION

한국,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

EU, 일본 등 선진국은 전환금융 운영중
탄소중립기본법 존재, 기후금융촉진 미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금융 촉진 법안 발의(2024.7)

3장 13개 조문 구성

기본 계획	기후금융 촉진위원회	공공금융 &채권발행	금융 기관
----------	---------------	---------------	----------

녹색금융과 저탄소 전환금융을 포함하는 기후금융 촉진 지원

자료 : EU Commission, 일본경제산업성(METI),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대표 발의(더나은미래)

참고

전환금융 지원사례(일본)와 우리나라 입법발의 내용비교

일본 전환금융 지원사례 분석

구분	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도입 후 1조엔(한화 9.5조원) 돌파 고탄소 산업에 전환금융 필요 인지, 정부가 전환금융으로 선제대응
지원사례 분석 (Mizuho)	심사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금융 지원을 위하여 기업의 저탄소 전환 전략 평가기준 마련 및 전담팀 구축 ❖ Mizuho 그룹은 전환전략 신뢰성과 투명성 검증 프레임워크 개발(거버넌스, 전환경로, 전환공시 등) ❖ '21년부터 전환금융경험자 '22년 지정금융회사 선정 ❖ '21년까지 정책금융기관만 전환금융가능하였으나 '22년부터 민간금융회사로 확대
	대기업 집중공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탄소 업종 내 중소기업보다 상환능력이 좋고 그린위험 위험이 낮은 대기업 중심 전환금융 지원 ❖ 대기업은 탄소중립 전략이 구체적이고 감축규모와 양 대 • 예) Mizuho, '21년부터 해운, 가스, 중공업 등 대기업 지원
	정책자금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환금융 확대를 위하여 정부 금융지원제도* 활용 • 기업이 전환전략을 검증받고 전환금융을 조달받으면 정부가 1년간 이자 일부 감면, 전략 검증비용 70% 지원 • 지정금융기관 조건 : 그룹내 전환금융 업무규정 마련, 전환금융전문인력, 일정비를 보우

Mizuho의 Transition Support Framework

Strategy and materiality	Meet the elements necessary for transition strategies (business strategies conducive to transition)
Governance structure	Have an appropriate governance structure for setting strategies and targets
Science-based targets	Have science-based targets aligned with the Paris Agreement
Disclosure status	Have no problems with transparency of strategies and targets, making progress toward targets
Prospects for developing /adopting decarbonization technologies	Have outlooks for adoption of technologies and cash flow based on strategies

붙임2 일본 금융그룹의 전환금융 주요사례

■ 일본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고탄소 업종별 대기업들에 대한 전환금융 사례가 축적

업종	기업명	금융형태	참여 금융사	규모	자금 활용처
닛폰유센	전환채권 (21.7월)	MUMSS, 노무라증권, 미즈호증권, SMBC Nikko, 골드만삭스(일본) 등	200억엔	(5년, 7년 만기)	- 선박 연료 저탄소화 - 해상풍력(양모노리)수소/LNG/LPG 활용 및 선박 운영효율성 향상
해운	미쓰이 상선 전환대출 (21.9월)	일본경제투자은행(DBJ), SMBC, SMBC신탁은행	n.a.	(15년 만기)	- LNG 연료 활용 선박 2척 건조
가와사키 기선	전환대출 기선 (21.9월)	DBJ, 미즈호은행, 미즈호신탁은행, SMBC신탁은행 등	1100억엔	(5년 만기)	- LNG 연료 활용 차량운반선박 건조

한국 기후금융 촉진법 주요 조항 분석

구분	내용
제2장 기후금융 촉진 등	제5조(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년 단위로 탄핵위와 협의하고 기후금융 촉진위원회 심의 거쳐 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후금융 촉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계획수립, 기관간 의견 조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제7조(공공금융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분류체계상의 활동에 대하여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자금공급 및 보증 실시
	제8조(금융회사의 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가 금융촉진을 위한 전략 수립 및 금융상품개발 유도, 관련 업무 거버넌스 강화 노력 기후위험리스크 선제 대비 및 평가 체계 및 기후금융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제9조(채권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등 녹색채권 발행 시 비용과 이자 지원
제10조(중소기업 녹색전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 특례 및 재정 지원 	

자료 : 일본 전환금융 동향과 시사점(우리금융그룹), 일본 전환금융 제도 및 은행권 동향(우리금융경영연구소), Transition Finance 2022 Market Overview(METI)

III

기후금융
법제전망

2. 기후공시 의무화와 공시 의무화 지원

EU는 CSRD를 토대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 싱가포르의 지속가능성 공시를 대비하여 보조금(SRG) 지원
기후공시 의무화 및 기후공시 지원 강화로 그린워싱 예방 및 기후대응분야 투자 활성화 기반 구축

EU CSRD 시행(2024)

EU CSRD 시행 (2024)

Directive (EU) 2023/4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9/403, Directive 2004/109/EC and Directive 2013/54/EU, as regards
 sustainability reporting

CSRD 시행 (2024)

Having regard to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in particular Articles 59 and 114 thereof,
 Having regard to the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Having regard to the opinions of 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Acting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

Whereas:

(1) In its communication of 11 December 2019 entitled 'The European Green Deal' (the 'Green Deal'), the European Commission made a commitment to ensure the provisions concerning non-financial reporting of Directive 2013/54/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¹⁾. The Green Deal is the new growth strategy of the Union. It aims to transform the Union into a modern, resource-efficient and competitive economy with no net emissions of greenhouse gases (GHG) by 2050. It also aims to protect, conserve and enhance the Union's natural capital, and protect the health and well-being of Union citizens from environment-related risks and impacts. The Green Deal aims to decouple economic growth from resource use, and ensure that all regions and Union citizens participate in a socially just transition to a sustainable economic system whereby no person and no place is left behind. It will contribute to the objective of building an economy that works for the people, strengthening the Union's social market economy, helping to ensure that it is ready for the future and that it delivers stability, jobs, growth and sustainable investment.

These goals are especially important considering the socio-economic damage caused by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need for a sustainable, inclusive and fair recovery.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²⁾ makes the objective of climate neutrality by 2050 binding in the Union. Moreover, in its Communication of 20 May 2020 entitled 'EU Biodiversity Strategy for 2030: Bringing nature back into our lives', the Commission commits to ensuring that by 2030 all of the world's ecosystems are restored, resilient and adequately protected. This strategy aims to put Europe's biodiversity on a path to recovery by 2030.

(2) In its Communication of 8 March 2018 entitled 'Action Pla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the 'Action Plan on Financing Sustainable Growth'), the Commission set out measures to achieve the following objectives: recent capital flows towards sustainable investment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manage financial risks stemming from climate-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보고 보조금(SRG)도입(2024)

Consultation Paper
 July 2023

Turning Climate Ambition into Action in Singapore - Recommendations by the Sustainability Advisory

싱가포르, 지속가능성 보고 보조금 도입 (2024)

Sus(2024) Reporting Grant

Get support on developing your first sustainability repor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s (ISSB) standards

About this programme

Investors are increasingly using climate-related disclosures to understand companies' environmental strategies and make their investment decisions. With heightened demand for companies to publish climate-related disclosures, including regulations to mandate climate-

한국, 기후공시 의무화법 발의

EU, 싱가포르 등 글로벌 ESG 공시 의무화, 기업에 보조금 지급 등 대응 지원 강화

글로벌 공시 의무화 대응 & 기업 대응 역량 강화 법령 대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4.11)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자본시장법 개정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에 기후전략 명시 및 지속가능성 사항 인증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 적용, 기업별 적응기간차등 및 보조금 지원 고려

자료 : EU Commission, 일본경제산업성(METI),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금융 특별법 대표 발의(더 나은미래)

THANK YOU

감사합니다.



ADDRESS

강원도 춘천시 수변공원길 11
4층 한국기후변화연구원



TEL

033)-259-0132



E-mail

silver011@kric.re.kr



WEBSITE

<https://www.kric.re.kr>

KRIC 한국기후변화연구원